변경대비표

2021.10.29

ㅇ 펀 드 명 :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[채권]

ㅇ 정정사유 :

- 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
- 2)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
- 3) 투자위험등급 변경 (5등급→6등급)
- 4) 법 개정사항 반영

ㅇ 상세내역 :

[집합투자규약]

[십압투사규약] 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0조(기준	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	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
가격 산정 및	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	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
기기 년 8 天 공고)	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	한다.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
8-1	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	격]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
	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류	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 종
	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	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
	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	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
	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류	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[당해 종
	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	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
	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	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
	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	②~④ (생 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(집합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	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
투자기구의	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	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
회계감사)	한다.	한다.
	1. <u>대차대조표</u>	1. <u>재무상태표</u>
	2.~3. (생 략)	2.~3.(현행과 같음)
	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상환	①~② (생 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금등의 지급)	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	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
	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	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
	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	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
	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	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39조(보수)	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	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
	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	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간
	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	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
	매일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	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
	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	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
	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	1.~3. (생 략)	1.~3. (현행과 같음)

	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(집합	①~③ (생 략)	①~③ (현행과 같음)
투자업자 및	<u>④ (신 설)</u>	<u>④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</u>
신탁업자의		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
변경)		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
		시킨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
		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
		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
		업자나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손실보상 또는
		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실보상
		또는 손해배상은 이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
		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제45조(투자	①~③ (생 략)	①~③ (현행과 같음)
신탁의 해지)	④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	④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의 경우에는 1개
	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	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
	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	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
	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	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
	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	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
	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	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에 따
	라 공고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	라 공고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
	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1) 집합투자기구		
정기결산에 따른	[요약]	
정정	- 위험등급 변경	
2) 기업공시서식	- 투자비용	
개정 반영	- 투자실적추이	
3) 투자위험등급	- 운용전문인력	
변경 (5등급→6		
등급)	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
4) 법 개정사항	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
반영		
	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
	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
	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
	가. 운용전문인력	
	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
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
	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
	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
	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
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
	│ │ 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련	한 사항
	1. 재무정보	
	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
	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	
	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
	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

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
	라. 운용자산 규모	
	 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
	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
	가. 정기보고서	
	나. 수시공시	
[요약정보]	[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]	[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]
투자비용	(- (
제1부. 모집 또	<u>*단 본 </u>	<u> </u>
는 매출에 관한	<u> </u>	1
는 "트 "		
2. 집합투자기구		
의 종류 및 형태		
제2부. 집합투자	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	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
기구에 관한 사	자기구로써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이	자기구로써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(표준편차)이
항	0.52%이므로 6등급 중 낮은위험(5등급)으로 분류	0.47%이므로 6등급 중 매우낮은위험(6등급)으로
10. 집합투자기	<u> 됩니다.</u> 1 됩니다.	<u> </u>
구의 투자위험		
라. 이 집합투자		
기구에 적합한		
투자자 유형		
12. 기준가격	 [산정방법]	
산정기준 및	(= 0 =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그	(- 0 0 - 7) 기준가격[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]은 그
집합투자재산의	·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	·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[당해
	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	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]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
평가	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	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[당해 종류 수
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	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	익증권의 순자산총액]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
20 × 04	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	익증권[당해 종류 수익증권] 총좌수로 나누어 산
	출합니다.	출합니다.
제5부. 기타	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	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
투자자보호를	② 결산서류	② 결산서류
위해 필요한	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	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	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
3.	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	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
] 3. 집합투자기구의	재산에 대한 결산서류(<u>대차대조표</u> , 손익계산서, 자	재산에 대한 결산서류(<u>재무상태표</u> , 손익계산서, 자
	산운용보고서)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	산운용보고서)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
공시에 관한	를 받아야 하고,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	를 받아야 하고,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
사항	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	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가. 정기보고서		
나. 수시공시	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	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
	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	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
	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	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
	니다. 	니다.
	-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	-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
	경우: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	경우: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
	지	

[간이투자설명서]

변경 항목	변경 전	변경 후
1) 집합투자기구		
정기결산에 따른	[요약]	
정정	- 위험등급 변경	
2) 기업공시서식	- 투자비용	

개정 반영	- 투자실적추이	
3) 투자위험등급	- 운용전문인력	
변경 (5등급→6		
등급)		
[요약정보]	[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]	[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, 총보수 및 비용]
투자비용	<신 설>	<u>총보수ㆍ비용</u>